탄 원 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군 관계자 8명 | 검사의 항소기각 및 원심 무죄판결 유지 탄원

사건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15 / 형사합의38-2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담당 형사재판부 / 사건번호: _____
피고인	구삼회 · 방정환 · 김정근 · 안무성 · 김상용 · 김창학 · 정성우 · 김세운
탄원 취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8명의 원심 무죄판결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 여덟 명 모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고 특별검사팀이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경과를 살피며, 같은 사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라도 실제로 받은 명령과 알고 있었던 정보, 수행한 행위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 여덟 명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존중해 주시고, 검사가 그 판단을 뒤집을 만큼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비상계엄과 국가기관에 대한 병력 투입은 결코 가볍게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한 명령을 내렸거나 알고도 위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과 더불어, 중대한 혐의일수록 피고인마다 범죄의 목적·고의·실행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는 2026년 10월 30일 이 사건 여덟 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검은 11월 4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는 적법한 불복절차이므로 그 주장 또한 성실히 심리되어야 합니다. 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여덟 명의 원심 무죄판결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탄원합니다. 원심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별로 지적한 증명의 공백이 항소심에서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대한 혐의라는 이유나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만으로 무죄 결론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인의 형사책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선고 보도에 따르면 원심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곧바로 각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명령을 받았는지, 그 목적과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지휘하거나 수행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회동 참석이나 출동·수송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에 어떤 형사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따진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군의 지휘체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명령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직책이 높거나 병력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국헌문란 목적과 개별적인 중요임무 종사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처음 명령을 받을 때 목적을 충분히 알지 못했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새 정보를 접한 뒤 명령을 계속 집행했다면 그 사정은 별도로 심리되어야 합니다. 결국 시작과 종료 시점 사이에 실제로 무엇을 알았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 적용할 법률의 원칙과 항소심의 심리 범위

형법 제87조·제91조에 따른 판단에서는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된 폭동 및 그 중요임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의사, 실제 수행행위와 관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엄의 선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범행의 구체적 목적을 인식하면서 중요임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범죄 목적과 고의는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관련 정황과 전후 행위에 의해 추인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정황도 빠짐없이 평가하시되, 그 종합 결과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라는 결론을 분명히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 제325조의 무죄판결 규정은 이러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특검의 구체적 항소이유와 증거를 충분히 심리한 뒤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 무죄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사건에 관여한 시점과 내용, 그때 이해할 수 있었던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공개된 원심 선고 보도에서도 피고인마다 지휘·실행의 내용과 인식 시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구성요건의 증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덟 명에 대하여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피고인별로 원심 판단과 특검의 공개 항소 취지를 대조해 살펴 주십시오.

가. 구삼회 피고인 — 단장직 내정과 실질적인 지휘·가담 여부

구삼회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여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맡기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동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부여받은 역할의 성격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원심 판단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직책과 대략적인 임무를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나 관련 문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정보사 요원들의 소집과 임무 부여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집된 요원들이 두 사람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특검은 회동뿐 아니라 계엄 선포 뒤 정보사 관련 장소로 이동해 지시와 보고를 접한 사정, 계엄 해제 뒤에도 인사명령을 대기한 사실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회동 당시에 실제로 어떤 임무가 설명되었는지와 이동 후 새로운 정보를 접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동·대기가 실제 보고 수령이나 지휘로 연결되었는지,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범행 목적을 알고 이루어진 것인지 증거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방정환 피고인 — 부단장직 제안과 개인별 인식의 범위

방정환 피고인 역시 같은 회동에서 제2수사단 부단장직을 맡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구삼회 피고인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단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정보사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보고를 받거나 명령을 내린 정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화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거나 이후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사전 임무 수령·대기 주장에 대해서도 방정환 피고인이 회동 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별도로 전달받은 설명이 있었는지, 부단장 역할을 실제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피고인의 행동이 방정환 피고인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방정환 피고인 자신의 언행과 이후 행동에 관한 증거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김정근 피고인 — 선관위 출동의 실제 목적과 현장 행위

김정근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병력 출동을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개된 선고 보도에 따르면 원심은 상부 명령이 급박하게 하달되었고, 선관위 서버 등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시설 경계·방호를 지원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병력이 청사와 울타리 외곽의 경계에 주로 관여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이 정상적인 계엄하에서도 국회·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행위의 객관적 위법성을 엄격히 살피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방호'라는 명칭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지시 문구, 병력의 배치, 출입·업무 통제 여부와 그 결과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라고 불린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한 다음, 국헌문란 목적과의 연결이 증명되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안무성 피고인 — 포고령 이전 출동과 일시적 출입 통제의 의미

안무성 피고인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보도된 원심 판단에 따르면 포고령 발령 전에 출발하여 그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당시 명령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민간인 출입을 잠시 통제한 행위가 있었으나 확정적인 출입 통제였는지, 시설 방어와 대기 요청의 성격은 어떠했는지까지 구분해 살폈습니다.

그러한 일시적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축소할 수 없습니다. 특검의 항소 취지에 비추어 출입 통제의 실제 범위·지속시간·지시자·현장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검토 역시 출동 당시 인식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은 시점과 그 이후 대기 또는 철수에 이르는 행동을 함께 보아야 균형 잡힌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마. 김상용 피고인 — 사전 인식이 의심되는 정황과 실제 준비·실행의 증명

김상용 피고인은 합동체포조 편성 및 관련 수사관 지원 임무와 관련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공개된 원심 판단에는 김용군 전 대령으로부터 계엄과 합동수사단 임무를 사전에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정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계엄 전의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확인되는지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전 인식의 정황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되는 연락이나 논의와 실제 체포조 편성·지시·실행에 대한 고의와 가담은 증거에 의해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검이 사전 모의와 임무 수명을 강조하는 만큼, 어떤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실제 인력 편성이나 지휘로 이어졌는지, 증거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차례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 김창학 피고인 — 국회 인근 출동과 명령 전달 범위

김창학 피고인에게는 국회 인근에 군사경찰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도된 원심 판단에 따르면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를 모두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체포와 같은 구체적 임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령 일부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미 전달하거나 수행한 명령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고위 지휘관이 실제 병력을 출동·지휘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주장과 원심 판단을 대조하려면 최초 명령의 전체 내용, 피고인이 실제 전달한 부분, 전달하지 않은 부분, 병력이 현장에서 실행한 내용, 피고인이 그 결과를 알게 된 시점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이 연속된 사실관계에 근거해 개별 범죄의 고의와 중요임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사. 정성우 피고인 — 법률 검토·이의 제기·진입 자제·복귀의 연속성

정성우 피고인은 선관위 전산실 관련 임무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개된 선고 보도에 따르면 원심은 그가 방첩사 법무실에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고,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며, 출동 부대원들에게 현장에 가까이 가지 말거나 진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복귀를 명령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시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그 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후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가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특검이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임무 종료 시까지 전체 시간대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이 피고인의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최초 명령을 전달한 사실과 그 결과를 확인하되, 법률 검토와 이의 제기, 진입 자제와 복귀 조치가 실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고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후 조치가 앞선 행위를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인식과 관여의 범위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아. 김세운 피고인 — 헬기 수송의 객관적 역할과 구체적 임무의 인식

김세운 피고인에게는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 쪽에 수송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병력 수송이 현장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공개된 원심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은 헬기 운용과 수송 임무를 수행했으나, 탑승 병력의 구체적인 현장 임무나 그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이 지휘관의 책임과 병력 투입 자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수송 지시의 목적과 전달된 정보, 피고인의 지휘 범위, 이동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후속 조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송이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에 기여했는지와 그러한 결과를 알고 의식적으로 지원하였는지가 각각 어느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4. 특검의 항소 주장만으로 원심의 증명 부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이 공개한 항소 취지는 크게 사전 모의 또는 임무 수명·대기, 국회·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대한 병력 출동·지휘의 위법성, 그리고 고위 군 지휘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이 주장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성실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여덟 명의 행위 유형과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추상적 판단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삼회·방정환에게는 회동 당시 전달된 내용과 이후 실질적 지휘 여부가, 김정근·안무성에게는 현장 출동·통제의 실질과 그때 알 수 있었던 정보가, 김상용에게는 사전 연락의 의미와 실제 준비·실행이, 김창학에게는 명령의 실제 전달 범위가, 정성우에게는 이의 제기부터 복귀까지의 과정이, 김세운에게는 수송 자체와 탑승 병력의 구체적 임무 인식이 각각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항소심에서 특검의 모든 주장을 성실히 검토하는 것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심이 구별해 판단한 개인별 인식과 행위를 뒤집을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증명이 부족하다면 여덟 명의 원심 무죄판결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의 중대성에 기대어 증명책임을 완화하지 마시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판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결론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누군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그러한 결과와 행위의 관계 및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도15105 판결에서 직권남용의 판단에 행위의 목적·필요성·상당성·법령상 요건 등을 고려하고, 단순한 위법·부당함과 형사처벌 대상으로서의 직권남용을 구별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요구되는 결과의 발생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된 선고 보도는 원심이 이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이 발생했거나 어떠한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 개별 피고인의 고의가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엄격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 역시 부족하다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상부의 명령, 계엄의 위법성, 개인별 고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내란·반란 사건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상관의 지시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명령이 실제로 내려왔는지, 그 명령의 위법성을 언제 어떤 자료에 의해 인식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이튿날 국회의 해제 요구 및 실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상황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객관적인 사건의 시간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시간에 각 피고인이 같은 정보를 동시에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전달·출동·철수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위법행위도 가볍게 넘기지 않되, 확인되지 않은 인식을 추정만으로 채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결어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여덟 명의 무죄판결을 유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저는 이 사건을 가볍게 보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토록 중대한 사건이기에 누구에게 어떤 범죄책임을 물을 것인지 더 엄격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심이 여덟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피고인별 행위와 인식에 관한 증명을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그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도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덟 명의 피고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며, 동일한 정보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사전 모의, 병력 출동,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개별 피고인의 국헌 문란 목적과 고의, 실제 중요임무 수행을 증명하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단지 추정이나 일반적 평가로 보충하여 유죄로 전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 피고인 구삼회, 방정환, 김정근, 안무성, 김상용, 김창학, 정성우, 김세운 여덟 명 모두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판결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탄원드립니다. 이 요청은 어떤 범죄도 면책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형사법이 정한 증명의 문턱을 끝까지 지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각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의 판단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엄정한 책임 추궁과 무죄추정이 함께 지켜지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담당 형사재판부 귀중